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하는 일

재해복구공제사업

1.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공제사업

■ 제도운영 개요

□ 공제등록 대상

- 건물 : 지방자치단체 소유건물의 일체
- 시설물 : 공제등록건물내에 있는 재산가액 100만원 이상의 시설
 - ☞ 자동차, 자전거 등 기동성이 있는 것과 박물관·전시관 등의 전시품 및 동식물류는 등록 대상이 아님
- 신체손해
 - ▶ 의무가입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건물

□ 공제등록 회비

- 건물 : 용도·구조별의 등록구분 및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시설물 : 시설물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신체손해 : 당해 건물의 용도에 따라 산정

□ 재해복구비 지급

- 지급대상 재해
 - ▶ 화재, 풍·수·설해 및 건물의 자연도괴·붕괴로 인한 손해
 - ▶ 건물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 ☞ 전쟁, 방화, 지진 등으로 인한 손해는 지급하지 아님
- 지급기준
 - ▶ 건물 재해복구비 : 등록구분 및 재해율에 따라 지급
 - ▶ 시설물 재해복구비 : 등록재산가액 및 재해율에 따라 지급
 - ▶ 신체손해 보상비 : 상해 또는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사업특징

- 손해보험대비 공제회비(보험료)가 40%저렴함
- 징수한 공제회비는 재해복구비로 지급하고 잔액은 적립하여 연차적으로 공제회비 인하 및 복구비확대지급,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기여

2. 지방관공선 재해복구공제사업

■ 제도운영 개요

□ 공제등록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선박 일체

□ 공제등록 회비

- 선박공제 : 선령 및 톤수를 기준으로 산정
- 충돌공제 : 당해 선박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 무사고 할인 : 당해 선박의 무사고 기간에 따라 선박공제회비를 3~10% 할인

□ **재해복구비 지급**

- 지급대상 재해
 - ▶ 침몰, 좌초, 충돌, 풍파에 의한 손해
 - ▶ 항방불명으로 인한 손해
 - ※ 피격, 나포, 천재지변, 고의 등에 의한 손해는 제외
- 지급기준
 - ▶ 전부손해 : 등록선박의 재산가 전액 지급
 - ▶ 부분 손해 : 등록선박의 수리비 전액 지급

□ **사업특징**

- 시중선박보험대비 공제회비(보험료)가 30%이상 저렴
- 징수한 공제회비는 재해복구비로 지급하고 잔액은 적립하여 연차적으로 공제회비 인하 및 복구비확대 지급,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기여

공공청사 정비사업

■ **사업안내**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청사정비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공공청사를 신·증축할 경우 소요재원을 대여하는 사업임

■ **제도운영 개요**

□ **지원대상 및 지원액(신축)**

(단위 : 억원)

정비구분	청사유형	지급한도액	정비구분	청사유형	지급한도액
신축 · 매입	시·도 청사	718	신축 · 매입	보건소	16
	시·군·구 청사	166		사업소	시·도
	읍·면·동 청사	10	시·군·구		15
	시·군·구민회관 (문예, 스포츠, 여성, 장애인 등)	77	증축	시·도 청사	75
	공무원 교육원	75		시·군·구 청사	15
벤처기업 지원센터	56	읍·면·동 청사		1	
소방서(파출소)	20(3)		기타 청사	5	

※청사유형별 지원금의 실제 지급액은 당해 건축비 소요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조건**

- 지원금 상환 :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일시상환 가능)
- 특별회비 납부 : 상환잔액에 대한 연리 3%(일할계산)

□ **지원방법 : 일시금 지급**

- 착공이후 지급신청시 배정전액 지급

손해배상공제사업

1. 영조를 손해배상 공제사업

■ **제도운영 개요**

□ **공제등록 구분**

- 일반등록 : 청사, 복지·숙박·환경시설, 공원,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해수욕장 등
- 특별등록 : 도로, 주차장, 구내치료, 물적손해, 생산물배상, 오염사고, 청소년수련시설 등
-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의무보험 가입대상임
- ※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사용·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을 등록대상으로 함.

